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審查報告書

1994. 3. 16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查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4年 2月 4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4年 2月 16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23回 永登浦區議會(臨時會)第1次 委員會(1994年 3月 16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朴忠會)

가. 提案理由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主要骨子

- 가.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함(안 제2조 제1항)
- 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의 2)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姜性熙)

個別公示地價 調査의 適正 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設置 運營中인 土地評價委員會의 活性化를 위하여 地域事情에 정통한 住民代表 等을 本委員會에 積極 參與시키고 必要한 境遇에는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標準地 및 隣近地價와의 均衡 等을 綿密히 檢討한 後 本委員會에 上程하여 實質的인 審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4. 1. 8. 市長으로부터 示達된 同 條例 改正準則(案)에 따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要請案대로 改正함이 可하다고 思料됨.

4. 審查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214 |
|------------|-----|

제출년월일 : 1994. 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골자

- 가.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함.(안 제 2조 제 1항)
- 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 6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1989. 11. 개정)
- '94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건설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중 “11인”을 “20인”으로 하고, 동조 제 3항 제 1호 중 “5인”을 “9인”으로, 동항 제 2호 중 “6인”을 “10인”으로 각각 한다.

제 3조 제 4호 및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제 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조의 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 지가심의회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중 5인…… 2. 제 3 조에서 정한 자중 6인…… | 제 2 조(구성) ① 20인 이내 ②(현행과 같음) ② 1. 9인 2. 10인 |
| 제 3 조(위원위촉)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부동산 중개업자 6. (생 략) 7. (생 략) | 제 3 조(위원위촉)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
| 제 6 조의 2(신 설) | 제 6 조의 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대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 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
| 제 8 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 제 8 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 지가심의회 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 12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